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올초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피규제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근거 신설(안 제10조제1호 신설)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자가측정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감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실내공기질 미측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개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이행 관련, 법정 측정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한 달 이내 자가측정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준 정비

다. 업무의 위탁 근거 정비(안 제14조제1항 개정)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기기 운영·관리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 중 “부착한”을 “붙인”으로 한다.

제7조의4제5호 중 “부착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후단 중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측정등”으로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측정망(자동으로 측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측정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3. 법 제9조의5에 따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차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법 제16조제1항 제3호			
1)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50	70	100
2)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500	1,000	2,000
카.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8호			
1)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종료		50	100	200

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종료 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0	350	500
3)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200	35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
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제1
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
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
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① (생 략) ② 삭 제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규모” 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④ (생 략)	제2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③----- --- “ <u>대통령령으로</u> ----- -----.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의 회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 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표지를 <u>부착한</u> 경우: 위반 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 내 ② (생 략)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의 회수 등) ① ----- ----- ----- ----- -----.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 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 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의 공표) ----- ----- ----- ----- -----.

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에 관한 정보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5. ----- 붙여 -----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

-----.

1.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 기록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 (생략)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만 해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 -----
 --. -----

 -- 측정등-----

 --.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

1. ----- 측정망-----

<u>당한다)의 설치 및 측정</u> <u><신 설></u> <u><신 설></u> <u>2. · 3. (생 략)</u> <u>② (생 략)</u>	----- <u>2. 법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u> <u>기의 부착 및 운영 · 관리에</u> <u>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지원</u> <u>3. 법 제9조의5에 따른 지하역</u> <u>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u> <u>위해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u> <u>지원</u> <u>4. ·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u> <u>같음)</u> <u>② (현행과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환경과	
연 락 처	(044) 201 - 6798